

한방치료

<개정 2004.3.29., 2005.1.4., 2009.9.3., 2012.1.1., 2013.7.1., 2016.3.1., 2019.3.5.>

항목	분류번호	단위	금액(원)
첩약	버-1	1일	20,000
탕전료	버-2	1첩	670
환약(환, 포, 캡슐)	-	1일	20,000
왕뜸치료	-	1회	15,000
추나요법	-	1회	16,000
약침술	허-1	1회	12,000
한방물리요법(저주파·중주파치료 등)	허-2	1일	10,000

- 입원환자는 기간제한 없이 인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- 외래환자의 경우 2009. 7. 1.이후 진료발생 분부터 적용하며, 한약(첩약)기간은 직 무상요양승인기간 중 60일 범위 내에서 기본인정하고
- 60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한약(첩약) 복용은 상병상태가 추가 한약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.(2019.3.5. 적용)
 ※ 2019.3.5. 이전은 추가 30일 이내 기간 인정